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령 조항

법 제17조(시체에 대한 예의) ① **시체를 해부**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.
② 시체나 그 시체의 해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시체를 인도하거나 화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하여 보존·관리하여야 한다.

법 제1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제2조를 위반하여 시체를 해부한 자
2.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를 해부한 자
3.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시를 하지 아니한 시체를 해부한 자
4.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
5.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
6.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
7. 삭제
8.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한 자

법 제2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**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**에 처한다.
1. **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시체 해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**
2. **제11조를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**
3. 삭제

법 제2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**50만원 이하의 과태료**를 부과한다.
1.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
2.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자
3. 제17조를 위반한 자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시행령 제8조(과태료의 부과)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**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**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·과태료금액·이의방법·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②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③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